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2021. . .	
연월일	(제 회)	

고령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자	고령군수 (건축허가과)
제출연월일	2021. . .

법무규제개혁담당 심사필

고령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일자 : 2021. 11.

제 출 자 : 고 령 군 수

1. 개정이유

개정된 건축법령의 내용반영과 그동안 건축조례 운영상 불합리한 일부 미비점의 보완을 통해, 상황 변화에 따른 규제를 완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건축위원회 심의 기준 완화 (안 제3조)

- 분양을 목적으로하는 건축물을 심의기준에서 제외하여 건축위원회 심의기준을 완화 함.

나. 가설건축물 신고 대상 완화 (안 제7조)

- 가설건축물 신고 대상을 군민 생활에 불합리한 부분 조정함으로써 신고대상 기준을 완화 함.

다.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단순화 (안 제24조)

-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규정을 건축법령과 같이 단순화함으로써 대지분할 편의 제공코자 함.

3. 내용 : 붙임 1 참조

4.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 「건축법」, 「건축시행령」, 「건축법 시행규칙」
- 나. 입법예고 기간 및 결과 : '21.10.7 ~ 10.27.(20일간), 의견없음
- 다. 예산관련사항 : 해당없음
- 라. 성별영향분석결과 : 이견없음
- 마. 규제영향분석 결과 : 이견없음
- 바. 건축위원회 심의 : 원안가결
- 사. 기타 관련사항 :

고령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령군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4조제5항 중 “영 제1항제11호”를 “영 제6조제1항제11호”로 한다.

제5조제5호 중 “법 제55조 또는 법 제66조”를 “법 제43조 또는 법 제84조”로 한다.

제6조의3제2항 중 “제14제2항”을 “제14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고령군 재무회계 규칙」”을 “「고령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7조제2항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6호를 각각 제1호 및 제2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중전의 제6호) 중 “경량구조(철구조물)”을 “경량구조(철구조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제10호 및 제12호를 각각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 제4호(중전의 제10호) 중 “연면적”을 “연면적 합계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4호부터 제18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10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 제8호(중전의 제16호) 중 “시장 환경개선”을 “시장환경개선”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중전의 제17호) 중 “알미늄”을 “알루미늄”으로, “대표소,간이매점,”을 “대표소, 간이매점”으로, “관리 사무실 등”을 “관

리사무실”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종전의 제18호) 중 “연면적이 200㎡이하”를 “연면적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로 하고, 같은 항 제19호를 삭제한다.

11. 연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 33제곱미터 이하의 이동형 간이저온저장창
고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영 제11조제2항제3호”를 “영 제11조제3항제3호”로 한다.

제9조제1항제5호 단서 중 “고령군지역에 건축사사무소”를 “건축사사무소”로 한다.

제9조의2제4항 중 “공사비가 「공공발주사업에 대한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별표5”를 “공사비가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별표5”로 한다.

제10조의3제1항제1호 본문 중 “영 제5조의5제1항제4호 가목 및 나목”을 “영 제5조의5제1항제4호”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5조”를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60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건축물은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62조제1항 제2호의”를 “건축물은”으로 한다.

제10조의4를 삭제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중 “2천제곱미터이상”을 “2천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1천제곱미터미만의 건축물 및 300제곱미터미만인 대지(공장의경우는 연면적 1천 500제곱미터이상 2,000제곱미터미만인 건축물)”를 “1천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를 “「관광진흥법」 제

2조제6호”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를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제42조의2 제2항제10호”를 “제48조제10호”로 한다.

4. 대지면적 3백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제23조 중 “3”을 “2”로 한다.

제2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호부터 제14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1. 주거지역 : 60제곱미터
2. 상업지역 : 150제곱미터
3. 공업지역 : 150제곱미터
4. 녹지지역 : 200제곱미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 60제곱미터

제26조제5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높은 건축물(높은 건축물을 중심으로 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시계 방향으로 정동에서 정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낮은 건축물을 향하는 경우에는 10미터 이상으로서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5배)이상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상하며”를 “이상으로 하며”로 한다.

제27조의2 및 제27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연면적 60제곱미터이하인 주거용건축물이
법 제80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와 주거용건축물”을
“연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법 제80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
는 주거용 건축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법 제42조에 따른 대지의 조경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건축위원회) ① 법 제4조 제1항 및 제5항, 영 제5조의5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령군 건축위원회 (이하“위원회)를 둔다.</p> <p>1.·2. (생 략)</p> <p>3. 삭 제</p> <p>4. <u>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다음 건축물의 건축</u></p> <p style="padding-left: 20px;">가. <u>연면적의 합계가 3,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u></p> <p style="padding-left: 20px;">나. 「주택법」 제16조에 의한 <u>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대상의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u></p> <p style="padding-left: 20px;">다. <u>주거용 건축물이 30세대 이상 포함된 주상복합건축물</u></p> <p style="padding-left: 20px;">라. <u>연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오피스텔</u></p> <p>5. (생 략)</p> <p>② ~ ⑰ (생 략)</p> <p>제4조(적용의 완화) ① ~ ④ (생 략)</p> <p>⑤ <u>영 제1항제11호 및 제2항제5</u></p>	<p>제3조(건축위원회) ① ----- ----- ----- ----- ----- --.</p> <p>1.·2. (현행과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u><삭 제></u></p> <p>5. (현행과 같음)</p> <p>② ~ ⑰ (현행과 같음)</p> <p>제4조(적용의 완화) ① ~ ④ (현행과 같음)</p> <p>⑤ <u>영 제6조제1항제11호</u> -----</p>

호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에 있어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용적률의 기준은 당해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서 주민공동시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하여 적용한다.

⑥ (생략)

제5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법 제6조, 영 제6조의2에 따라 법령 등의 제정·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기존의 건축물 및 대지에 건축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건축을 허가하거나 신고를 처리할 수 있다.

1. ~ 4. (생략)
5. 기존 건축물이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5조 또는 법 제66조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 화장실, 계단, 승강기의 설치 등 그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기존 건축물의

-----.

⑥ (현행과 같음)

제5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

-----.

1. ~ 4. (현행과 같음)
5. -----

--- 법 제43조 또는 법 제84조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6. (생략)

제6조의3(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① (생략)

② 예치금은 법 제21조에 따라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주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4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연면적에 대하여 산정한 건축공사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건축주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착공신고시 예치금을 영 제10조의2 규정에 의한 보증기간이 공사기간 보다 1년 이상 추가된 보증서의 제출이나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

③ 현금으로 납부되는 예치금의 납부 및 반환은 「고령군 재무회계 규칙」에서 정하는 세입세출외현금의 관리규정에 따른다.

④ ~ ⑥ (생략)

제7조(가설건축물) ① (생략)

② 영 제15조제5항제16호의 규

6. (현행과 같음)

제6조의3(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① (현행과 같음)

② -----

-----제14조제2항--

③ -----
----- 「고령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7조(가설건축물) ① (현행과 같음)

② -----

정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필요에 따라 접었다 펼수 있는 구조물

3. 레일 등을 설치하여 일정구간을 이동할 수 있는 구조물

4. (생략)

6. 골조가 경량구조 (철구조물의 경우, 부재규격 100밀리미터 이하)로 보온덮개, 비닐, 합성수지재질, 천막 등 이와 유사한 구조로 된 창고용도 건축물

8. (생략)

10. 이동이 용이한 컨테이너,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로서 농업, 임업, 어업에 사용되는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의 농막

<신설>

12. (생략)

13. 이동이 용이한 컨테이너, 알루미늄사시, 기타 이와 유사한 조립식의 간이구조로서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의 현금인출기

-----.

<삭제>

<삭제>

1. (현행 제4호와 같음)

2. ---- 경량구조(철구조물-----

3. (현행 제8호와 같음)

4. -----

----- 연면적 합계가 -----

11. 연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 33제곱미터 이하의 이동형 간이저온저장창고

5. (현행 제12호와 같음)

<삭제>

용으로 사용되는 건축물

14. · 15. (생 략)

16. 시장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
요하다고 인정하여 군수가 지
정 · 고시한 전통시장의 공지
또는 점용허가를 받은 도로에
사전 관할 소방서장과 협의하
여 설치하는 차양시설 또는 비
막이 시설

17. 이동이 쉬운 컨테이너, 알미
늄 샤시 등 이와 비슷한 구조
로서 20제곱미터 이하의 매표
소, 간이매점, 및 시설물의 관리
를 위한 관리 사무실 등

18. 공장내 연면적이 200㎡이하
로서 마감재를 흡광판으로 시
공한 창고 용도의 건축물

19. 연면적이 10㎡ 이상 33㎡이
하의 이동형 간이저온저장창고

제8조(표준설계도서 이용건축물)
법 제14조제1항제5호 및 영 제1
1조제2항제3호에 의해 건축신
고로 할 수 있는 표준설계도서
의 용도 및 규모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 · 공고한 표준설계

6. · 7. (현행 제14호 및 제15호
와 같음)

8. 시장환경개선-----
--

9. ----- 알루
미늄 -----
----- 매표
소, 간이매점 -----
----- 관리사무실

10. ---- 연면적 합계가 200제
곱미터 이하-----

<삭 제>

제8조(표준설계도서 이용건축물)
----- 영 제11
조제3항제3호-----

제1항 제2호의 최종감리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제10조의4(건축물의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①영 제23조의2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
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삭 제>

1. 휴게음식점·제과점·일반음
식점 또는 「게임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게임제공업·인
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로
서 1동에서 영업장으로 사용하
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
미터(영업장이 지하층에 설치
된 경우에는 그 영업장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이
상인 건축물. 다만, 영업장(내
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을 제외한다)이 지상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
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곳에서 하는 영
업장은 제외한다.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2호·제4호·제7호부터 제7호의5까지 해당하는 용도로서 1동에서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영업장이 지하층에 설치된 경우에는 그 영업장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 나목,

제6호에 해당하는 용도로서 1동에서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3호에 해당하는 학원 건축물

②영 제23조의2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화재, 침수, 지진 등 재해나 재난발생으로 인해 군수가 특별히 건축물의 안전에 대한 점검

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경우

2. 정기점검 결과에 따라 수시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 될 경우. 다만, 이 경우는 필요한 점검의 항목만 적용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수시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그 사유와 실시절차를 문서로서 미리 알려야 한다.

제12조(대지안의 조경) ① 법 제42제1항에 따라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연면적(동일 대지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이 2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퍼센트(단, 공동주택은 15퍼센트이상)

2. (생략)

3.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미만의 건축물 및 300제곱미터미만인

제12조(대지안의 조경) ① -----

-----.

1. -----

----- 2천제곱미터 이상-----

----- 15퍼센트 이상-----

2. (현행과 같음)

3. ----- 1천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

대지(공장의경우는 연면적 1천 500제곱미터이상 2,000제곱미터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신 설>

② 제1항의 기준에 불구하고 영 제27조제1항제5호 및 제10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2. (생략)
- 3.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 4.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가목에 따른 전문휴양업의 시설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종합휴양시설
-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2 제2항제10호에 따른 관광·휴양형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설

4. 대지면적 3백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② -----

-----.

- 1. 2. (현행과 같음)
- 3.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 4.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

- 5. -----
----- 제48조제10호-----

치하는 관광시설

6.·7. (생략)

③·④ (생략)

제23조(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법 제5
4조제4항에 따라 건축물의 대지
가 3 이상의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로서 그 걸
치는 면적이 각각 그 대지면적
의 과반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그중 가장 많이 속하는 지역·
지구 또는 구역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제24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
할제한) 법 제57조제1항 및 영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
이 있는 대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면적에 미
달되게 분할할 수 없다.

1. 전용주거지역 : 150 제곱미터

2. 일반주거지역 : 60제곱미터

(다만, '90. 1. 18이후 토지구획
정리사업으로 시행된 대지는 1
30 제곱미터)

3. 준주거지역 : 70제곱미터(다
만, '90. 1. 18이후 토지구획정

6.·7.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제23조(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

-- 2 -----

제24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
할제한) -----

1. 주거지역 : 60제곱미터

2. 상업지역 : 150제곱미터

3. 공업지역 : 150제곱미터

리사업으로 시행된 대지는 130
제곱미터)

4. 중심상업지역 : 300 제곱미터

5. 일반상업지역 : 150 제곱미터
(다만, 폭20미터도로에 접한 대
지는 300제곱미터)

6. 근린상업지역 : 150 제곱미터
(다만, 폭20미터도로에 접한 대
지는 300제곱미터)

7. 유통상업지역 : 200 제곱미터

8. 전용공업지역 : 150 제곱미터

9. 일반공업지역 : 150 제곱미터

10. 전용공업지역 : 200 제곱미
터

11. 보전녹지지역 : 350제곱미터
(자연취락지구인 경우에는 200
제곱미터)

12. 생산녹지지역 : 200 제곱미
터

13. 자연녹지지역 : 350 제곱미
터(자연취락지역인 경우에는 2
00제곱미터)

14. 제1호 내지 제13호에 해당
하지 아니하는 지역 : 60제곱
미터(다만 토지구획정리사업
으로 시행된 대지는 130제곱미

4. 녹지지역 : 200제곱미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 6
0제곱미터

<삭 제>

터)

제26조(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 ④ (생략)

⑤ 영 제86조제3항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건축물(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호의 거리를 띄어서 건축하여야 한다.

1. (생략)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남쪽방향의 건축물 높이가 낮고, 주된 개구부의 방향이 남쪽을 향하는 경우에는 높은 건축물 각 높이의 0.8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0.4배)이상이고, 낮은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1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0.5배)이상

제26조(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1. (현행과 같음)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높은 건축물 (높은 건축물을 중심으로 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시계 방향으로 정동에서 정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주된 개구부 (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낮은 건축물을 향하는 경우에는 10미터 이상으로서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배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5배)이상

제27조(공개공지의 확보) ① (생략)

② 영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확보하여야 하는 공개공지 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에 대한 다음 각 호의 비율 이상하며, 영 제31조제2항에 따라 지정한 건축선 후퇴부분의 면적은 공개공지 등의 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 4. (생략)

③ ~ ⑤ (생략)

제27조의2(주택의 유지관리·지원)

① 법 제35조의2 제1항 단서 규정에 의거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된 단독주택으로서 용자 및 보조할 수 있는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과 같다.

1. 건축물 대장상 사용승인일 또는 사용승인서를 교부 받은 날로부터 20년이 경과한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중주택의 소유자

② 군수는 매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

③ 사업지원의 범위는 노후된

제27조(공개공지의 확보) ① (현행과 같음)

② -----

----- 이상으로 하며 -----

-----.

1. ~ 4.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삭제>

주택의 내.외부 개량 및 보수 비용으로 한다.

④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은 「고령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 신설 2017.12.29.>

제27조의3(결합건축대상지) 법 제

77조의15제1항 단서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1.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지정·고시된 택지지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에 따른 용도지구

제28조(옹벽 및 공작물 등에의 준용) ①·② (생략)

③ 영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제1호의 규정은 영별표 1 제13호 공장에 준하는 용도지구의 건축제한을 적용하며, 동항 제2호의 시설은 시설의 종류에 따라 영별표 1 제13호·제14호·제15호에 준하는 용도지구의 건축제한을 적용하

<삭 제>

제28조(옹벽 및 공작물 등에의 준용)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영 제118조제3항-----

고 동항 제4호의 시설은 시설의 종류에 따라 영 별표 1 제18호에 준하는 용도 지구의 건축제한을 적용한다.

제31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① 연면적 60제곱미터이하인 주거용 건축물이 법 제80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와 주거용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8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8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이행강제금의 2분의1을 부과한다.

1. (생략)
2. 법 제35조에 따른 건축물의 유지·관리의무사항중 조경의 무면적을 위반한 건축물
3. 4. (생략)
- ②·③ (생략)

-----.

제31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① 연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법 제80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주거용 건축물-----

-----.

1. (현행과 같음)
2. 법 제42조에 따른 대지의 조경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3. 4. (현행과 같음)
- ②·③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고령군 건축허가과	
연 락 처	(054) 950 - 6353